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 청산의 현재적 과제

곽건홍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군수공장과 광산, 공사장, 전쟁터 등으로 끌려갔던 700만 조선 민중들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다. 침략전쟁 말기 일제의 수탈 가운데 가장 혹심한 피해는 인적 수탈이었다.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하거나 군인·군속·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갔던 이들이 입은 집단적인 피해는 현재까지 진상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과거사 청산’ 대상 가운데 하나는 침략전쟁기에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반성, 이에 따른 배상과 민간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그러나 침략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패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사를 ‘청산’ 하는 입장이 아니라 과거사를 ‘부활’ 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일본 경제부흥을 일궈낸 쇼와昭和 시대를 추억 한다’는 미명하에 2005년 개관을 목표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히로히토를 찬양하는 ‘쇼와 천황 기념관’ 건립, ‘쇼와의 날’ 제정 등

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식민지배의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민중들의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정통성이 없었던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은 그 후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에도 '과거사 청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강제노동'¹ 피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일협정을 근거로 개인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곧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정리되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문제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피해 당사자들이 한일협정으로 개인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 등 관련 기록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회피하여 진상 규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왜곡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역사는 급기야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정부로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를 더는 믿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 포기서 제출을 시도하

1 일제 침략전쟁기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용어는 그동안 학계에서 주로 '강제연행', '강제동원' 등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공장·광산·토목공사장 등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점, '강제연행', '강제동원' 등의 용어는 주로 노동력 동원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된 이후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노동상태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 강제노동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자 한다.

게 했다. 이는 곧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전망을 아래로부터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오늘의 한국사회가 반드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역사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위로부터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청산' 그리고 책임

8·15 직후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보상운동,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을 배경으로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정부는 1948년 4월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액이 포함된 약 411억 엔에 이르는 대일배상 요구액을 조사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2월 '대일배상심의회'를 설치하고,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완성했다. '대일배상요구조서' (이하 '조서')는 현물 배상으로 지금 249.6톤, 지은 89.1톤 등이었으며, 일본 국채·공채·보험금 등의 확정 채권 부분,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망자 조위금·부상자 상이 수당 등 인적 피해 부분, 일본군 점유 사용 등의 물적 피해, 농축산물 등의 저가 수탈로 인한 피해 등 피해액은 총액 약 314억 엔, 400만 상해 달러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조서' 가운데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1946년 3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미군정청 보건후생부에 등록된 105,115명(사망자 12,603명 포함)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서'는 1952년 제1차 한일회담의 '청구 8개 항목'으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한국 정부측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되었다. '조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보상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최초의 대일배상 요구였다.²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논쟁이 된 것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이 무효인가? 유효인가?라는 기본조약에 대한 문제와 청구권 문제였다. 기본조약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청구권 문제는 1952년 미·영 등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대일강

2 오오타 오사무, 「한일 청구권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32~37쪽.

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a) 항에 근거했다. 곧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일강화조약 제14조 배상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양국의 재산 및 채무관계를 포함한 청구권의 처리는 한일 양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는 제4조 (a) 항에 따랐다.

따라서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의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과거사 청산'을 가늠하는 잣대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초기부터 '과거사 청산'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곧 대한제국은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일본 영토가 되었으며, 식민지배 기간 동안 조선의 '근대화'에 공헌했고,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 재산의 처분으로 대일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인식으로 일관했다. 또한 한일협정은 청구권의 의미와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일본측에서 원하던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약"했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는 항상 거리를 두었다. 한일회담에 임하면서 비록 이승만 정권이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자 하는 관점 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민중 속에 내재화되어 있던 반일 감정에 편승하여 국민을 동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냉전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구축을 동아시아 지역 지배전략으로 채택한 미국의 구상을 수용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채택에 따른 경제개발 자금의 필요성 등 국내외적 조건이 성숙함에 따라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은 뒤로 한 채 이른바 무상 제공 3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라는 '경제 협력' 방식 으로 피로 얼룩졌던 '과거사'를 타협했다. 8·15 이후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 등 민중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던 '대일배상요구조서', 이를 계승한 '청구 8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은 1964년부터 치열하게 전개된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가혹하게 진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일 양국은 청구권 문제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선언했으나, 그 순간 위로부터의 ‘과거사 청산’은 실패를 예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초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 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신고 기간이 10개월이었으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또한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등 신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서 행해진 ‘청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곧 60만 명에 이르는 원폭 피폭자, 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 사망자에 대해서도 3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불했다.

그 후 주로 일본 등지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의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오늘날까지 민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의 한일협정 관련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외교통상부—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인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정말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요 한 원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련 기록을 30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은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2002년 6월 21일 한일협정 관련 기록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0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측에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내 보상입법조치에 따라 종료된 상황으로 판결났다”거나, “최종 결론의 공개만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성을” 가지며, “부적절한 반일 또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어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북일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0년이 훨씬 지난 기록의 공개 요구에 대해 최종 결론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은 공개하지 못하며,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비논리적 대응이 정부에서 계속되는 한, 또 일본 정부로부터 인계 받은 강제동원자 명부 또한 현실의 논리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한³ 우리는 분명 아직도 일제 침략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강제동원’의 역사 안에 갇혀 있으며, 또 하나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과거사 미청산’의 역사, 끊임없는 방관과 회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진정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상을 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있으며, 아울러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치유의 노력을 계울리 했던 한국의 역대 정권에게 있음을 역사는 반드시 기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과거사 청산’ 운동 : ‘조용한’ 저항에서 새로운 ‘실험’ 까지

8·15 해방 직후 일본·중국·만주 등지에서 귀환한 조선인은 1948년 12월까지 110만 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귀환 후 ‘태평양동지회’·‘태평양전쟁유가족동인회’ 등을 조직하고, 보상 요구 자료 수집·위령제 거행·유골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

3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사무국장 홍상진은 2003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41만 명에 이르는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 수립 직후에는 국회에 강제동원 노동자의 미불임금 채무 이행, 일본 정부에 대한 사망 배상금 청구 등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정통성 없는 정권의 등장에 따른 반공권위주의체제의 강화 과정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 당사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까지도 심지어 ‘빨갱이’로 내몰리는 시대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아픈 상처를 단지 ‘기억’ 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내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1973년 4월 ‘태평양전쟁전사자유족회’를 결성하고, 사망 피해자 1인당 1,0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1970년대 초 원폭 피폭자였던 한 한국인의 제소로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소송은 1990년대 이후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 당사자들의 보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든법)이 제정되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나치정권과 그들의 동맹국, 동조자에 의해 정복당한 시민 대중의 일원이었거나 이들의 전쟁포로로서, 1929년에서 1945년 사이의 어떤 기간 동안이든, 나치정권이나 그들의 동맹국과 동조자들에 의해, 또는 이들에 의해 점령되었거나 통치되었던 지역에서 거래한 기업에 의해서, 임금 없이 노동하도록 강요받은 모든 사람”, 곧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희생자’이다. 따라서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제에 강제동원되었던 군인·

4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 소송에 대해서는 김은식, 「해외에서의 한국인 징용자 소송과 향후의 과제」『올바른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현 단계 문제점과 향후 방향』(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2003.1.24; 정연진, 「대일배상 소송을 통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회복운동과 해외한인의 역할」(www.truelaw.net)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군속, 일본군 ‘위안부’, 징용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소송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소송 대상은 “직접적으로 또는 보조자나 계열사를 통해서 그 노동을 수행케 한 어떠한 단체나 그로부터의 이권계승자”로 규정했다. 넷째, 강제노동 피해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개인들이 받아야 했던 임금과 이익 그리고 이행한 노동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의 현재 가치”이다.

미국에서 ‘징용배상특별법’에 근거한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소송은 1999년 10월 오노다小野田 시멘트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소송으로 확대되었다.⁵ 오노다 시멘트회사를 대상으로 한 재판은 9월 8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으로 있다.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기각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첫째,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다. 징용 소송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1992년 9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3명이 후지코시를 대상으로 제소한 재판은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柳井俊二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 간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곧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시효의 기산점

5 한국을 포함 4개국 피해자들이 제소한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면책특권이 있는 점,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된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소송이 기각되었으나, “일본의 행위는 의심할 바 없이 야만적이었으며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으로 삼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일본의 구헌법에 따라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일본군 '위안부' · 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1992년 12월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판부재판). 셋째, 과거의 기업과 현재의 기업이 채권 · 채무관계를 계승하지 않은 별개 회사라는 주장이다(1997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이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 오사카 공장을 상대로 제소한 '일본제철징용자' 소송).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징용배상특별법'에서 '이권계승자'를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의식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이 국제법상 법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국가만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991년 12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서 군인 · 군속 · '위안부' 등 40명이 제소한 1심 판결).

한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최근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곧 앞서 언급한 일본제철 소송에서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했으므로 강제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자유를 억압" 당하면서 노동에 종사한 '강제노동'을 인정한 점, 신일본제철 · 후지코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해결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화해' 움직임이 보이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변화 움직임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강제동원 · 강제노동 피해 당사자들은 각 기업별로 '화해' 사례를 넓혀서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홀로코스트 Holocaust 소송을 통해 1999년 12월 독일정부와 도이치방크 · 다이器械크라이스 - 벤츠 · 지멘스 등 대기업들이 100억 마르크의 배상기금을 조성하고, 분배 문제도 타결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여 독일에 강제동원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강제동원 문제 청산에 대한 새로운 '실험'은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이하 '특별법(안)'] 제정 움직임으로 나

터났다. 2001년 10월 김원웅 의원 등 국회의원 69명이 성안한 ‘특별법(안)’은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를 저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침략전쟁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특별법(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특별법(안)’의 목적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곧 역사적 실체를 복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적용 범위는 1931~1945년 사이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이다. 셋째, 피해자의 피해 상황·피해 발생 원인과 국가의 책임 등 진상 규명 활동,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 조사, 국내외 자료 수집 분석, 진상 보고서 작성, 희생자 및 위령 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을 위해 ‘역사기억재단’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역사기억재단’의 설립은 지속적인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은 장기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특별법’ 제정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

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진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위령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위령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가의 입장 표명, 정책수립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 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조사의 범위)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② 제①항의 보고서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원인
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 유족 그 밖의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희생자와 그 유족, 관련 민간단체의 노력의 내용과 그로 인한 성과 및 피해
6.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내

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제24조(역사기억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공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재단법인인 역사기억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을 출연한다.

‘특별법(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과거사 청산’ 문제의 현재적 과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노동력 동원의 ‘강제성’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집’ (1939. 9~42. 2), ‘관알선’ (1942. 3.~44. 8), ‘징용’ (1944. 9~45. 8)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은 동원 방식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합법’을 가장한 강제동원이었다.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진 노동의 형태도 군대식 노동규율에 기반한 ‘강제노동’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력 강제동원과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진 노동의 ‘강제성’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소장처 파악, 관련 기록의 공개, 증언 구술, 문헌 기록의 조사와 연구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에서 1999년 조직된 ‘나치전쟁범죄 및 일본제국 정부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 The 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은 100명이 넘는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여 미국 내에 산재

해 있는 나치의 전쟁범죄 관련 비밀기록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5월부터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제국정부정보공개법’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Disclosure Act of 2000에 따르면, “일본제국 정부 기록이라는 말은 그 인물에 관하여 1931년 9월 18일부터 194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떠한 명령에 의해 또는 이와 공동으로 인종, 종교, 민족적 출신, 혹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인물의 생체실험 등으로 박해를 명령, 교사, 원조하고, 그 외 협력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일체의 인물에 관련한 기밀취급의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를 가리킨다.

식민 지배의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강제동원의 규모와 그 실태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를 게을리 한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침략전쟁기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중국노동자 38,935명의 이름과 강제노동 실태를 기록한 ‘화인華人노동자 사업장별 취로 조사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2만 쪽에 이르는 기록은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광산 등 135개 기업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이러한 기록의 존재 여부를 부인해 왔다.⁶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실상, 징병 과정의 실상, 귀환과정 등에서 나타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지속적인 ‘과거사 청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동원 기록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강제동원 기록관’은 도항증명서·공탁명부·포로 수용소의 포로 명부 등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정리하여 편찬·활용해야 한다. 특히 관

6 『연합뉴스』, 2003년 7월 18일자.

련 기록의 공개를 바탕으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진상 규명에 노력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 활동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미래로

1992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요집회를 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다. 소송을 위해 다시금 현해탄을 건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있다. 해마다 8·15 무렵이 되면 신문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의 고단한 삶을 소개하고 지면을 채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다.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는 과거 역대 정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 청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자세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적 포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난 시기 정통성 없는 역대 정권이 저지른 왜곡과 무관심의 결과이다. 현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지역을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을 위해서는 불과 60여 년 전에 자행되었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이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의 ‘과거사 청산’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애매한’ 사과 표현에서 벗어나 일본제국주의 지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 내 기록을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피해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장기 지속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앞선 과제는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진상 규명 작업

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남북한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다. 민간 피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이러한 활동은 남북한 사이에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북한과 일본의 수교 과정에서 민족적 공조를 강화하여 통일 이후의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대비해야 한다.

진상 규명 작업의 결과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자체가 '과거사 청산'의 역사로 역사화되는 과정일 것이다. 정부는 만일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일본측과 합의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의 연령이 이미 고령 이므로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최소한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도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식민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 21세기 초 한국사회는 아직도 잘못된 '과거사'에 갇혀 있는 셈이다. 갇힌 문을 여는 열쇠는 감춰지고, 왜곡되었던 진상을 근거 법률을 제정해서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가능하다.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곽건홍 einkor@hanmail.net |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저서로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주요 논문으로 「침략전쟁기(1937~1945)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존재형태」 등이 있다.